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

<table>
<tr><td rowspan="5">수급자
(신청인)</td><td colspan="2">성명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성별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전화번호</td><td colspan="2">휴대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주소</td></tr>
<tr><td>신청
사유</td><td colspan="3">[ ]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자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
[ ]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
[ ] 수급자가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(개월간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대리
수령인</td><td colspan="2">성명</td><td colspan="2">생년월일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전화번호</td><td colspan="2">휴대전화번호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주소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수급자와의 관계</td></tr>
</table>

본인은 위와 같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장 귀하

첨부서류

1.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(신청인 신분증)**
2. **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(본인명의 변경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)**
3.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: 피성년후견인인 사실,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,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
4.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
유의사항

1.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